

# 제 2 부



# 심의· 의결현황



제1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제2장 대통령선거 심의·의결현황 비교



# 제1장 심의·의결현황 및 분석



# I. 심의·의결 현황 개요

## 1. 자체심의

심의담당부서는 정기간행물대장에 등록된 매체 중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할 가능성이 있는 419개의 심의대상매체(중앙일간지 24개, 지역일간지 103개, 기타일간지 3개, 종합주간지 41개, 지역주간지 222개, 월간지 17개, 뉴스통신 9개)를 선정하고, 해당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을 위반한 9건의 자체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결정을 하였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의결건수(47건)에 비하면 그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선 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기간이 270일이지만 제19대 대선은 탄핵 결정으로 조기에 실시되어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약 80일로 축소되었고, 여론조사보도요건 관련 심의가 2016년부터 중앙여론조사심의 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의결현황을 결정유형별로 살펴보면 권고 4건(44.5%), 주의 3건(33.3%), 경고 2건(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 등의 제재결정은 없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건(55.6%), 광고 제한 위반이 3건(33.3%),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 위반이 1건(11.1%)이었다.

매체유형별 의결현황을 보면, 일간지는 6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중앙일간지는 2건, 지역일간지는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일간지에 대한 제재 6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제한 위반 2건으로 나타났다. 결정유형별로는 주의와 권고가 각각 3건이었다.

주간지는 3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지역주간지에 대한 제재는 없었으며 3건 모두 종합주간지에 대한 제재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 1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1건, 광고제한 위반 1건이었다. 결정유형별로는 경고 2건, 권고 1건으로 나타났다.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의결현황]**

간별	계	위반 유형				결정 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 신문	중앙	2	1		1			1	1
	지역	4	3		1			2	2
종합주간지		3	1	1	1		2		1
지역주간지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총계		9	5	1	3	0	2	3	4

**2.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일간지의 칼럼에 대한 시정요구였다. 시정요구인은 해당 칼럼이 공정성 및 형평성 그리고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요구심의를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처리 결과 경고 결정을 하였다.

**3. 반론보도회부청구 및 재심청구**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반론보도회부청구와 재심청구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 II. 자체심의 분석

### 1. 위반유형별 분석

####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정
2017대선-자심1	대구일보	2017.3.21.	26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주의
2017대선-자심4	미래한국	2017.4.5.	8~14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경고
			26~29	5·9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2017대선-자심5	경남매일	2017.4.10.	23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주의
2017대선-자심6	시민일보	2017.4.18.	3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권고
2017대선-자심9	조선일보	2017.5.9.	B7	[두근두근 뇌운동] [629]얼굴 삼행시	주의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사는 모두 5건이었다. 이중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칼럼이 3건 있었으며, 나머지 2건은 각각 뉴스통신의 사실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 부분만을 누락한 보도와 선거일 당일에 뇌운동 관련 교육자료를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성명 및 사진을 강조한 보도였다.

#### (1)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칼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제재받은 사례가 2건 있었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칼럼에 게재하여 제재받은 사례는 1건 있었다.

경남매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당선을 지지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주변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더 좋은 후보'로 표현하고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권고 결정을 받았다.

미래한국은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개의 칼럼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념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 (2) 그 외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보도 중에는 지난 심의위원회 제재사례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례들이 있었다.

대구일보는 대통령선거 출마예정자들을 평가하는 한 뉴스통신사의 사실을 전제하면서 홍준표 출마예정자에 대한 비판 부분만을 누락하여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뇌운동을 위한 교육자료 섹션에서 선거일 당일에 문재인 후보의 사진을 활용하여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기사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주의 결정을 하였다.

### 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정
2017대선-자심8	주간한국	2017.4.24.	14	文 사주, 安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경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1건 있었다. 주간한국은 역술인이 사주, 풍수지리 등을 활용하여 정당한 근거없이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여 심의위원회의 경고 결정을 받았다.

### 다. 광고 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정
2017대선-자심2	경향신문	2017.3.22.	2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권고
2017대선-자심3	주간경향	2017.3.21.	21	명사들의 아주 특별한 서재 - 책과 연애하는 41가지 방법	권고
2017대선-자심7	영남일보	2017.4.24.	11	5월9일 대통령 선거-대권은?	권고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3건이었다. 지난 대선 심의위원회 제재사례들은 모두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의견광고였던 반면 이번 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광고에 대해 제제한 사례는 없었으며, 3건 모두 상업광고에 대한 제재였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가 번역하여 그의 명의를 드러나는 서적 광고를 게재하여 권고 결정을 받았다.

주간경향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필한 서적을 광고하면서 집필에 참여한 대통령선거 출마예정자들(더불어민주당 안희정, 바른정당 남경필, 국민의당 안철수)의 명의를 드러나도록 광고를 게재하여 권고 조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역학연구소 광고를 게재하여 제재를 받았다. 해당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효과를 줄 우려가 있어 권고 결정을 받았다.

## 2. 결정유형별 분석

### 가. 경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 중 2건(22.2%)의 기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하였다. 2건 모두 종합주간지에 게재된 칼럼에 대하여 제제한 것이었다. 미래한국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주간한국은 객관성 및 사실보도 기준을 위반하여 경고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기사가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결정을 하였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정
2017대선-자심4	미래한국	2017.4.5.	8~14	정권이 바뀐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칼럼 및 기고
			26~29	5·9대선은 체제수호 vs 반체제 전쟁	
2017대선-자심9	주간한국	2017.4.24.	14	文 사주, 안에 우월... 安 음택 훼손 변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칼럼 및 기고

### 나. 주의

자체심의 의결 중 주의 결정은 3건(33.3%)이 있었다.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2건이었다. 대구일보는 공정성과 형평성 기준을, 경남매일과 조선일보는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여 주의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언론사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결정을 하였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위반유형
2017대선-자심1	대구일보	2017.3.21.	26	불신과 걱정만 앞서는 대선 D-50	공정성/ 형평성
2017대선-자심5	경남매일	2017.4.10.	23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젠 국민 품으로	공정성/ 칼럼 및 기고
2017대선-자심10	조선일보	2017.5.9.	B7	[두근두근 뇌운동] [629]얼굴 삼행시	공정성

#### 다. 권고

자체심의 의결 9건 중 권고 결정은 4건(44.5%)이 있었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2건, 종합주간지 1건이었다. 결정유형별로는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 3건 있었으며, 공정성 기준을 위반한 칼럼이 1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직선거법과 심의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결정을 하였다.

의결번호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정
2017대선-자심2	경향신문	2017.3.22.	2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광고 제한
2017대선-자심3	주간경향	2017.3.21.	21	명사들의 아주 특별한 서재 - 책과 연애하는 41가지 방법	광고 제한
2017대선-자심7	시민일보	2017.4.18.	3	'당선 가능성' 문재인 vs. '더 좋은 후보' 안철수?	공정성/ 칼럼 및 기고
2017대선-자심8	영남일보	2017.4.24.	11	5월9일 대통령 선거-대권은?	광고 제한

### 3. 매체유형별 분석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지 130개(중앙지 24, 지역지 103, 기타 3), 주간지 263개(종합지 41, 지역지 222), 월간지 17개, 뉴스통신 9개로 총 419개 매체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2개, 지역일간지 4개, 종합주간지 3개 등 총 9개 매체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 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중앙일간지 중 2개 매체에 대해 주의 1건, 권고 1건의 제재조치를 하였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 위반 1건, 광고 제한 기준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지 중에서는 4개 매체가 제재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결정유형별로 분류하면 주의 2건, 권고 2건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간지 중에서는 3개 매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한 각 1건씩 있었다. 결정유형별은 경고 2건, 권고 1건이 있었다.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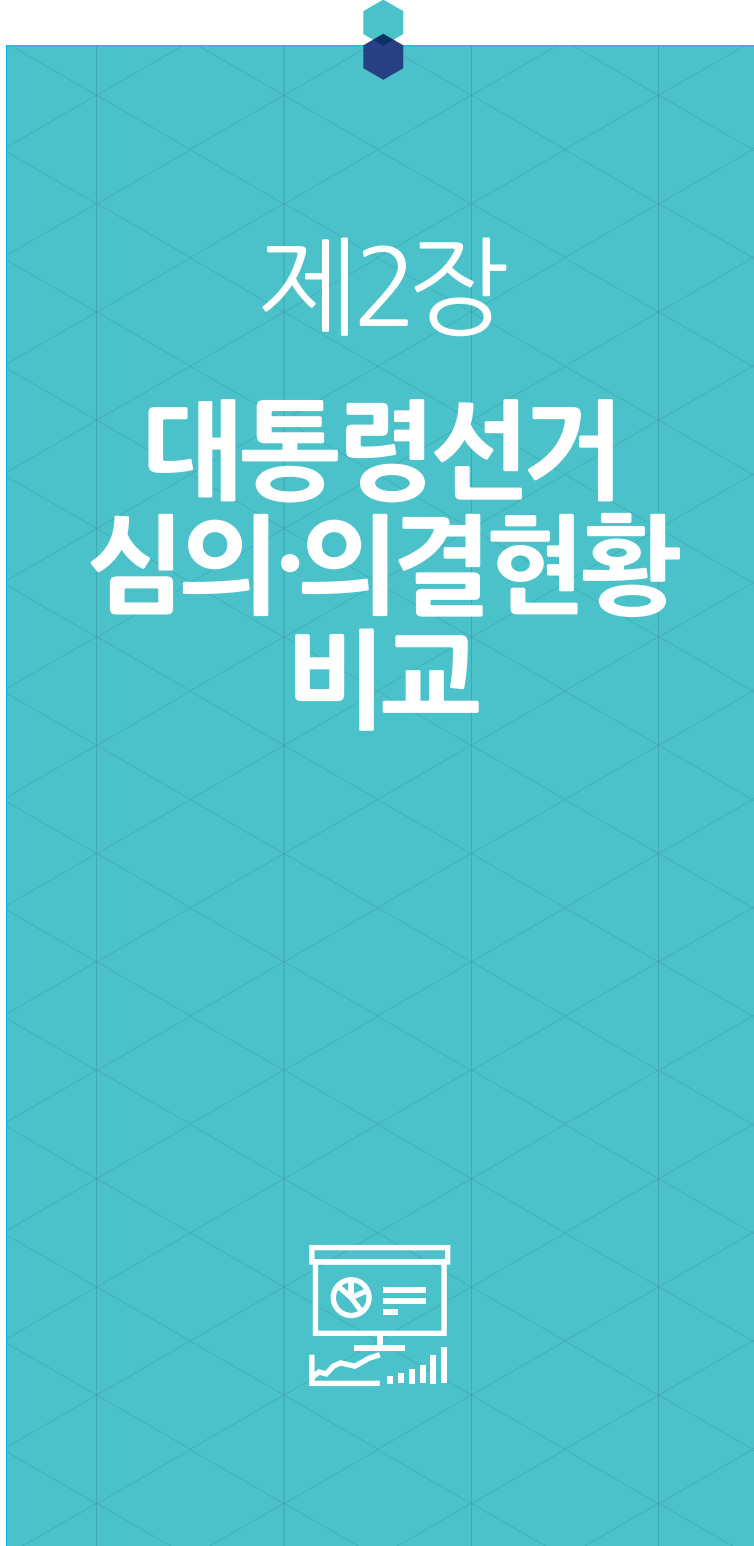
간별	계	위반 유형				결정 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제한	기고 등	정정 보도문 등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자체 심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		1				1
		조선일보	1	1				1	
	지역 일간지	경남매일	1	1				1	
		대구일보	1	1				1	
		시민일보	1	1					1
		영남일보	1		1				1
	종합 주간지	미래한국	1	1				1	
		주간경향	1		1				1
		주간한국	1		1			1	
총계	9	5	1	3	0	0	2	3	4

### III. 시정요구 심의·의결 현황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는 1건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중앙일보의 2개의 칼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문재인 후보자는 심의대상 칼럼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것처럼 묘사하고, 후보자의 대북정책, 집권능력, 경제철학 등을 폄하하였으며, 후보자를 ‘좌파 대통령’, ‘정서적 친북주의자’ 등 편향적으로 표현하고, 후보자의 정책 및 한반도 정세를 기초로 장래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시정요구인은 언론인으로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자의 당선을 가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한 것일 뿐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문재인 후보자,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평소 발언과 행동을 토대로 작성하여 객관적 근거가 있으며, 상상임을 명확히 밝힌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대상 칼럼은 비록 상상이라고 밝히긴 하였으나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그 내용 일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사 칼럼을 연속적으로 게재한 점, 피시정요구인이 중앙일간지로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심의대상 칼럼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 제2장

## 대통령선거 심의의결현황 비교



심의위원회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이래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마다 해당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대선에 대한 선거기사 심의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처음 시작되어 올해 있었던 제19대 대선까지 총 4차례 있었다. 그동안 설치·운영되었던 제16대, 제17대, 제18대 및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 의결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 1. 결정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심의 유형	결정 유형	제16대 대선 (2002)	제17대 대선 (2007)	제18대 대선 (2012)	제19대 대선 (2017)	계
자체심의	사과문 게재			1		1
	경고결정문 게재		2			2
	경고	3	13	8	2	26
	주의	9	19	27	3	58
	권고		1	11	4	16
	소계	12	35	47	9	103
시정요구 심의	정정보도문 게재			1		1
	반론보도문 게재		2			2
	경고				1	1
	주의	1				1
	권고					0
	취하			1		1
	기각			1		1
	각하			1		1
	소계	1	2	4	1	8
총 계		13	37	51	10	111

통상 대선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은 270일이나,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60일 후에 조기에 치러져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이 약 80일로 축소되었다. 각 대선 심의위원회의 의결건수는 제16대 대선에서 13건, 17대 대선에서 37건, 제18대 대선에서 51건이었으며,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10건이었다.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후로 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과문 게재 부분은 삭제되었다.

지난 제17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경고결정문 게재와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 2건씩,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과문 게재와 정정보도문 게재가 각 1건씩 있었던 반면,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조치한 의결이 없었다.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 자체심의 의결 총 103건 중에서 주의 결정이 58건(5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고 26건(25.2%), 권고 16건(15.5%), 경고결정문 게재 2건(1.9%), 사과문 게재 1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심의에 대한 결정은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동안 총 8건이 있었으며 이 중 제재결정은 정정보도문 게재 1건, 반론보도문 게재 2건, 경고 1건, 주의 1건 등 5건이 있었다.

## 2. 자체심의 위반유형별 의결현황 비교

위반유형	제16대 대선 (2002)	제17대 대선 (2007)	제18대 대선 (2012)	제19대 대선 (2017)	계
공정성 및 형평성	6	28	12	5	51
객관성 및 사실보도			9	1	10
여론조사 보도	6	4	12		22*
광고 제한		3	10	3	16
후보자 기고			4		4
총 계	12	35	47	9	103

\* 여론조사 보도 위반으로 제재받은 22건 중 제16대 대선에서 제재받은 1건은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머지 21건은 모두 여론조사보도요건을 위반한 안건임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의 의결은 총 103건이 있었다. 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안건이 51건(49.5%)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그 뒤로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21건(20.4%), 광고 제한 위반 16건(15.5%), 객관성 및 사실보도 10건(9.7%), 후보자 기고 4건(3.9%) 순으로 뒤따랐다.

여론조사보도요건에 대한 심의는 2016년부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여론조사보도요건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다. 대선 선거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경우(심의기준 제8조제1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심의기준 제8조제2호) 또는 경쟁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심의기준 제8조제3호)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거나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사는 8건이 있었으나(객관성 및 사실보도 항목에 포함),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로 제재받은 기사는 없었다.

광고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받은 사례 중 제17대 대선과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13건은 모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유도한 의견광고였다.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광고에 대하여 제재한 사례는 없는 반면 후보자 저서 광고, 역학연구소 광고 등 상업광고 3건에 대하여 제재하였다.

### 3.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분석

선거명	의결 번호	시정 요구인	피시정 요구인	보도일	지면	기사 제목	결정
제16대 대선 (2002)	2002 시심1	노무현	월간 조선	2002년 12월호	76~97	'단독선두' 이회창 심층 인터뷰 내가 집권한다면..	주의
					98~113	김연광의 대통령후보 연구③ '정상인' 이회창은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114~118	담당기자가 본 달라진 이회창의 면모 '이 못난 사람을 지켜주신 덕분에..'	
					119~122	이회창의 작전 참모 유승민	
					123~125	미국, 김정일에 경고 : '그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다'	
					126~127	대선의 유일한 변수는 이회창에 대한 위해 가능성? 경호비상 걸린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2007)	2007- 시심-1	이명박	경향 신문	2007. 10.30.	5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될까	반론 보도문 게재
	2007- 시심-2	이회창	시사 IN	2007 12.11.	32	이회창 대선잔금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반론 보도문 게재
					33	이회창 후보 두 아들 대선 뒤 재산 '쑥쑥'	
제18대 대선 (2012)	2012 대선-37	문재인	문화 일보	2012. 10.17.	1	"靑보관용' 盧-김정일회담' 盧지시로 폐기"	각하
	2012 대선-42	문재인	월간 조선	2012년 12월호	62~73	金正日 앞에서 盧武鉉은 이렇게 말했다!	취하*
	2012 대선-43	문재인	조선 일보	2012. 11.27.	A5	朴-시급한 계층 우선, 文-전 계층에 평등 지원... 복지철학의 충돌	정정 보도문 게재
	2012 대선-46	문재인	조선 일보	2012. 10.23.	16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기각
제19대 대선 (2017)	2017 대선 -시심1	문재인	중앙 일보	2017. 4.13.	34	한 달 후 대한민국	경고
					34	3주 후 대한민국	

\* 2012대선-42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어 취하함

제16대 대선부터 제19대 대선까지 심의위원회는 총 8건의 시정요구심의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중 7건의 시정요구인은 야당 후보자였고, 1건의 시정요구인은 여당 후보자였다. 피시정요구인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가 5건, 종합주간지 1건, 종합월간지 2건으로 나타나며, 지역지 및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요구심 의는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주장, 피시정요구인(언론사)의 의견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인의 청구취지와 다른 수위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취지와 다른 수위의 제재를 하기도 한다.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총 8개의 시정요구심의 의결 중 제재가 결정된 것으로는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1건, 주의 1건이 있었다. 이중 반론보도문 게재 2건 및 정정보도문 게재 1건은 시정요구취지와 동일한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 사안이었고, 경고 1건 및 주의 1건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하에 시정요구취지보다는 약한 수위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그 외에 기각 1건, 각하 1건, 취하 1건이 있었는데, 이 중 취하 1건은 당사자 간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되어 취하된 것이었다.

#### 4. 재심청구 의결현황

선거명	재심의결 번호	원심 의결 번호	재심 청구인	매체명	기사 제목	원심 결정	재심 결정
제18대 대선 (2012)	2012 대선 22	2012 대선19	시민일보		안철수, 국민을 바보로 아나?	사과문 계재	기각
					안철수,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안철수 '불출마중용' 진실은?		
					안철수, '꿈수정치'부터 배웠나		
					안철수, 킹이나 킹메이커나		
					안철수 발목잡는 '안철수의 생각'		
					문재인, 안철수에 '책임총리' 추파		
2012 대선 47	2012 대선37 (시심)	문재인	문화 일보	"靑보관용 '盧-김정일 회담록' 盧 지시로 폐기"	각하	기각	
2012 대선 54	2012 대선46 (시심)	문재인	조선 일보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기각	기각	

4차례의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청구는 3건이 있었으며, 모두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청구된 것이었다. 자체심의 안전에 대한 제재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1건 있었고, 후보자가 시정요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있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2건 있었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신청취지를 반영하여 재심청구를 심의하였으나, 원심결정 과정에서 심의기준을 오해하여 과도한 제재 결정을 하였거나 원심결정 이후 원심을 파기 또는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의 변화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심청구들을 기각하였다.

## 5. 심의대상매체 비교

위반유형		제16대 대선 (2002)	제17대 대선 (2007)	제18대 대선 (2012)	제19대 대선 (2017)
일간지	중앙	27	27	31	24
	지역	59	77	100	106
주간지	종합	23	22	32	41
	지역	317	263	210	222
월간지	종합/여성	6	7	18	16
	지역	-	-	7	1
뉴스통신		1	-	3	9
총 계		433	396	401	419

대선 심의위원회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400개 전후의 심의대상매체를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심의대상매체의 수는 제16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433개였고, 제17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396개,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401개였다.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대장에 등록된 매체 중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할 가능성이 있는 419개 매체를 선정하여 심의하였다.

제18대 대선 심의위원회에 비하여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중앙일간지의 수가 7건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 및 2012년경 지하철역 등지에 배포되었던 무가지 7개 매체가 대부분 폐간됨에 따라 2017년 심의대상매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제16대 및 제17대 대선 심의위원회에 비하여 제18대 및 제19대 대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매체 중 지역주간지의 수는 감소한 반면 지역일간지, 종합주간지 및 뉴스통신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